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를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차     | 2차 | 3차 이상 |
| 가.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| 법 제65조제2  | 200만원  |    |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제1호           |       |
| 나.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2호   | 300만원 |
| 다.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| 법 제65조제2항제3호   | 300만원 |
| 라.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1항제2호   | 600만원 |
| 마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4호   | 100만원 |
| 바.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5호   | 100만원 |
| 사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6호   | 300만원 |
| 아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·검사를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7호   | 300만원 |
| 자.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(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·통계 또는 정보를 말한다. 이하 이 목 및 차목에서 같다)을 보관·관리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65조제2항제8호   | 100만원 |
| 차.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9호   | 100만원 |
| 카. 법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9호의2 | 500만원 |
| 타. 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       | 50만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제9호의3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파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<br>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1<br>항제3호 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150만원 |
| 하.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<br>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<br>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65조제2<br>항제10호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150만원 |
| 거. 법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<br>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<br>의로 조작한 경우   | 법 제65조제1<br>항제3호의2      | 100만원 |       |       |
| 너.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<br>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1<br>항제4호 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150만원 |
| 더. 법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<br>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<br>항<br>제10호의2 | 300만원 |       |       |
| 러.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<br>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<br>항제11호       | 50만원  |       |       |
| 머. 법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<br>방법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<br>항제12호       | 100만원 | 300만원 | 500만원 |
| 버. 법 제5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중대<br>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<br>항제13호       | 100만원 |       |       |